

무배당 삼성화재 이음보증형보험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삼성화재 이율보증형보험(1년, 2년, 3년) 및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2. 사업경영의 지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기초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있는 전 지역으로 한다.

3. 피보험자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신탁업자로 한다.

4. 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적립금 계산 시 적용하는 이율은 적용이율로 하며, 적용이율(‘단위보험’ 및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로 하며, 적용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에 해당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용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

회사는 지표금리를 고려하여 기준이율을 산출하며,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 $\text{기준이율}(\%) = (\text{회사채수익률}① + \text{국고채수익률}② + \text{통안증권수익률}③) / 3$

① 회사채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② 국고채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③ 통안증권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만기 통안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

적용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

회사는 지표금리를 고려하여 기준이율을 산출하며,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 $\text{기준이율}(\%) = (\text{회사채수익률}① + \text{국고채수익률}② + \text{통안증권수익률}③) / 3$

① 회사채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② 국고채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 ③ 통안증권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만기 통안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 나.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동안 확정 적용한다.
- 다.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방식 변경 시 변경 전 계약에 대해서는 제 '나' 항의 적용기간 이후부터 적용한다.
- 라. 회사는 년 2회 이상 적용이율의 변경내역을 보험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한다.
- 마. 세부적인 적용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적용이율운용지침을 따른다.

5. 보험료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

6.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에 관한 사항

- 가. 보험기간 :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계약의 해지일까지
- 나. 납입기간 : 전기납
- 다. 수금방법 : 계약자의 직접납입

7. 보험금의 종류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름

8. 해지환급금의 지급

이 보험을 해지한 경우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일 반중도 해지시에는 중도해지이율(적용이율 × 60%)로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단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을 가입시에는 13.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9.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 없음

10.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선정

이 보험은 특별계정을 선정 운용하며, 특별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 (2)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 법률이 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라.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 (1) 보험료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지급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① 보험금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③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④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이 보험의 특별계정의 계정간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1. 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적립금은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2. 단위보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계약자에 의하여 납입되는 보험료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나.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설정된 각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다.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 ‘나’ 항을 준용합니다.

라. 제 ‘다’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가입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 상환합니다.

13.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한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한다.

나.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가입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의 보증기간(3년)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한다.

다.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나’ 항을 준용한다.

라. 제 ‘다’ 항에도 불구하고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만기 상환한다.

마.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적립금에 중도해지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한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80%로 한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기타 사항

이 보험의 내용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